

# 폐기물 처리 시방서

## 1. 일반사항

-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하는 건설, 지정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.
- 주요내용 : 폐기물 수집, 운반 및 보관 및 처리

## 2. 관련법규

-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

## 3.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

-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폐기물처리업체는 철거업체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,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.
-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, 운반, 보관,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.

## 4.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

- 현장 대리인은 용역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,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.
- 용역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용역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,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,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.

## 5 안전, 보건 및 환경관리

-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,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장 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, 안전, 보안,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,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- 도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\*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
  - \*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,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
  - \*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,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
  - \*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, 비상구(탈출구)에 물건적치 금지
  - \* 현장 정리정돈
- 도급자는 용역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\* 전기사고 예방대책
  - \*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
-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안전점검, 안전진단,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, 안전검사,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.
 

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(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)

  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
  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  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  -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6. 현장관리

-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용역 현장에 안내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고 용역 완성 후에는 신속히 철거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 구조물의 해체 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용역 시공 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의 용역 시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.
-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상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.

- 화약, 휘발유,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도급자는 용역현장에서 지하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7. 환경보전

- 도급자는 용역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.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소음, 광음,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## 8. 관계법규의 준수

- 도급자는 용역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용역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또 이러한 제반수속에 따르는 허가,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 9. 도급자의 의무

- 모든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를 충분히 검토,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.
- 현장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의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용역시행 중에 실시하는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## 10. 용역의 일시 중지

- 용역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, 용역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.
  - \*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
  - \* 공정관리로 보아 용역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

## 11. 폐기물 운반 처리

- 운반차
  - \* 건설폐기물의 수집.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(임시) 수집.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.
  - \* 수집.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. 운반차량,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,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,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,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.

## 12. 폐기물 수집 운반

- 수집. 운반
  - \* 건설폐기물은 토사, 폐벽돌, 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 콘크리트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급속편류(철근등)등 성상별로 수집. 운반하여야 한다.
  - \*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. 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(토사, 폐벽돌, 폐콘크리트,

페아스팔트 콘트리트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. 운반할 수 있다.

- 보관 및 처리

- \*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,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재활용이 가능할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 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.

**13. 폐기물 처리기준**

- 폐기물의 처리기준

- \* 폐기물은 그 수집. 운반. 보관.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. 운반. 보관. 처리하여야 한다.
- \* 폐기물은 재활용성. 가연성.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. 운반하여야 한다.

**14. 용역 사진 제출**

-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, 필요에 따라 용역내용(공사 전, 중, 후)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15. 준공검사**

-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,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출(준공도서 포함),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 및 검사원의 지시에 따른다.
-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.

**16. 용역후의 현장정리**

- 용역이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 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, 정리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